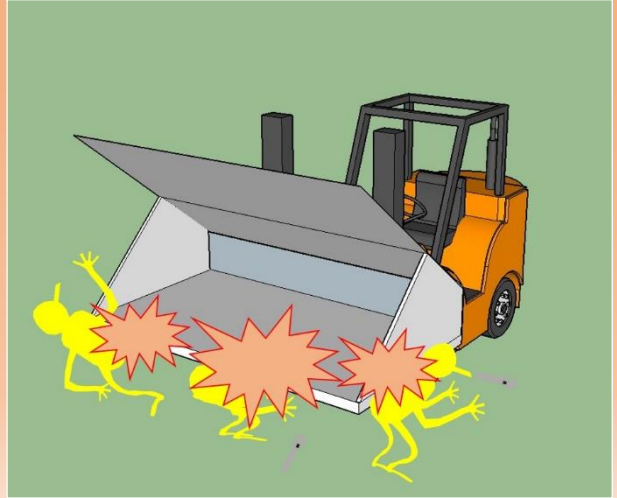


지게차 수리 중 버킷에 깔림

2021년 1월 경남 함안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버킷이 작창된 지게차(2.9톤, 디젤) 포크를 3m정도 들어올려 유압장치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낙하하는 버킷(포크)에 깔려 1명 사망하고 동료작업자 2명이 부상당함



재해발생 원인

- 출입금지조치 미실시
- 안전블록 미설치
- 안전모 미착용

재해 예방 대책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유압에 의해 기계·기구 등이 지탱되어 있는 장소에서 수리또는 점검 등의 작업 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한 후 근로자를 출입하도록 하여야 함
- 지게차의 버킷 하부 등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

관련법령
안전보건기준에
관한 규칙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조(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)